#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4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문대림・박정현・김한규

위성곤 · 강유정 · 민홍철

복기왕 • 박해철 • 정진욱

박수현 · 정준호 · 서미화

임미애 · 문정복 · 이훈기

주철현 · 오세희 · 강선우

강준현 • 박범계 • 박희승

한준호 · 신장식 · 정성호

황명선 · 부승찬 · 김 현

이정헌 • 박지원 • 이재관

조계원 • 전진숙 • 황정아

이광희 • 추미애 • 안태준

윤준병 • 박홍배 • 이용우

김성환 • 허성무 • 최민희

윤후덕 • 정춘생 • 이학영

이재강 • 김문수 • 김정호

백승아 · 김영호 · 문금주

의원(5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

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결정된"을 "결정되거나 구금되었던"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희생자"를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사람과 그 유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그 사람과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로 한다.

이 경우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 합계의 한도액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유적"을 "유적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

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4·3사건 기록의 홍보·활용

4의3. 제주4·3사건 관련하여 국내외 인권 단체와 교류·협력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 ① 국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 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12호의2 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제주4·3복지의료재 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업을 제주4·3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중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등"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를 "(조사권 및 자료제출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인 사람에 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	제1조(목적)	
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		
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		
의 명예회복 및 <u>희생자에 대한</u>	<u>보상</u>	
<u>보상</u> 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	2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		
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		
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u>결</u>	<u>결</u>	
정된 사람을 말한다.	정되거나 구금되었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생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8. (생 략)
- 9. <u>희생자</u>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신 설>

13 ~ 15.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 로 결정된 <u>사람에</u>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 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u>후단 신설></u>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로 결정된 <u>사람</u>: 9천만원
-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1. ~ 8. (현행과 같음)
9. <u>희생자 및 유족</u>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제주4
•3복지의료재단의 선정에 관
<u>한 사항</u>
13 ~ 1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에16조(보상금) ①
<u>사람과 그 유족에</u>
이 경우 희생자로 결
정된 사람의 유족이 다수인 경
우에는 다수의 유족이 받는 보
상금 합계의 한도액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으
로 한다.
1
사람과 그 유족
2
<b></b>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u>사</u> <u>람</u>: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 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 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 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 나. (생 략)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u>제1항제2호</u>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 ⑦ (생 략)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 지자지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 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

<u>사람과 그 유족</u>
3 <u>사</u>
<u>람과 그 유족</u>
· 
 가.·나. (현행과 같음)
2
<u>그 사람과 그</u>
유족에게 제1항제2호 ③ ~ ⑦ (현행과 같음)
]24조(기념사업 등)

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 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주4·3사건 관련 <u>유적</u>의 보존·관리
- 4. (생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u>유적과</u> 기록-----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주4·3사건 기록의 홍 보·활용
- 4의3. 제주4·3사건 관련하여 국내외 인권 단체와 교류·협 력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12호의2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제주4·3복지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u>사실조사 및 협조의무</u>) ① (생 략)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u>정당한 사유가 없</u> 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설립 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u>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
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업
을 제주4·3복지의료재단에 위
탁할 수 있다.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
에의 출연)
<u>স</u> ্
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u>추가 진상조사 등</u>
제27조(조사권 및 자료제출의 요
<u>구</u> )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한다</u>. <단서 신설>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다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실 무위원회는 1회에 한정하여 30 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u>있다.</u>